



선 람	기관의 장

제1761호
2023년 3월 9일
목요일

조 례

○ 조 례	제 1948호	남동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의 회 사 무 국	2
○ 조 례	제 1949호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 회 사 무 국	7
○ 조 례	제 1950호	남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홍 보 실	9
○ 조 례	제 1951호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기 획 예 산 과	12
○ 조 례	제 1952호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총 무 과	15
○ 조 례	제 1953호	남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 화 관 광 과	29
○ 조 례	제 1954호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문 화 관 광 과	33
○ 조 례	제 1955호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문 화 관 광 과	35
○ 조 례	제 1956호	남동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평 생 교 육 과	37
○ 조 례	제 1957호	남동구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노 인 장 애 인 과	42
○ 조 례	제 1958호	남동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 육 정 책 과	45
○ 조 례	제 1959호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보 육 정 책 과	49
○ 조 례	제 1960호	남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환 경 보 전 과	52
○ 조 례	제 1961호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환 경 보 전 과	59
○ 조 례	제 1962호	남동구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교 통 행 정 과	61
○ 조 례	제 1963호	남동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교 통 행 정 과	64
○ 조 례	제 1964호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식 품 위 생 과	69
○ 조 례	제 1965호	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식 품 위 생 과	71
○ 조 례	제 1966호	남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건 강 증 진 과	73
○ 조 례	제 1967호	남동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치매정신건강과	80

공 고

○ 공 고	제 530 호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도 로 과	82
-------	---------	----------------	-------	----

회 람								
--------	--	--	--	--	--	--	--	--

조 례

남동구의회의에서 의결된 남동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년 3월 9일

남동구 조례 제1948호

남동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는 남동구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남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회 안팎에서 의원의 교육연수 기회가 자유롭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스스로 체계적인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외부기관의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의원의 의정 전반에 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의회 교육연수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교육 목표 및 내용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 결과 등의 평가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해당 연도 교육연수계획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 연도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4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교육연수과정 등) ① 교육연수과정은 교육연수계획에 따라 기본교육·직무교육·교양교육·특별교육으로 구분하고 각 교육연수과정별 내용과 대상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② 의장은 교육연수과정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새로운 교육연수과정을 신설하거나 다음 연도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의원 개별교육연수 지원) ①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7조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교육연수 신청서

신청자 성명		소속 (위원회)	
연락처 (핸드폰)		이메일	
< 교육연수 신청 내용 >			
교육기관		교육명 (과정)	
교육장소		교육기간	
교육내용			

※ 필요시 추가 자료는 별첨하여 제출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남동구의회 의장 귀하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의회의 의원이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각종 교육연수활동 지원 규정을 정하여 의원이 체계적인 교육연수 활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 (안 제2조 ~ 제3조)
- 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통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5조)
- 교육연수과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의원 개별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증빙서류의 제출 (안 제8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년 3월 9일

남동구 조례 제1949호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53조 및 영 제54조”를 “법 제53조”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남동문화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제4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남동문화재단의 임원을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 2022년 10월 중 남동문화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남동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비하여 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구 수정(제명) 및 관계 법령 정비 (안 제3조)
- 총무위원회 소관 남동문화재단 사무 신설 (안 제6조)
-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남동문화재단의 임원 신설 (안 제40조)

조 례

남동구의회의에서 의결된 남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3년 3월 9일

남동구 조례 제1950호

남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전자정부법」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로 한다.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⑤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점검 등의 필요에 따라 구가 정한 날 또는 시간에 예외적으로 운영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로 한다.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9조 및 제10

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등)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 자문을 활용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홈페이지의 폐기 및 관리) ① 구청장은 활용도가 낮거나 불필요한 홈페이지를 폐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 폐기 및 콘텐츠 이관 시 「전자정부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홈페이지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콘텐츠 저작권 등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홈페이지 폐기 시 기존 폐기대상이 아닌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0조)제2항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5조)제1항 중 “인터넷시스템”을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인터넷시스템 점검 및 홈페이지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관계 법령 수정(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제8조제1항)
「전자정부법」→「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 홈페이지의 폐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

조 례

남동구의회의에서 의결된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년 3월 9일

남동구 조례 제1951호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330명”을 “1,33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302명”을 “1,303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8명”을 “32명”으로 하
고, 같은 조 제3호 중 “1,330명”을 “1,335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동
총 계		1,335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330							
	2급	1	1						
	4급	8	6	1	1				
	5급	68	37	2	8	1	20		
	6급 이하 계	1,253							
별정직 계		4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3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2023년 기준인건비 법정인력(지방의회정책지원관)을 정원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정원(직급)을 조정하여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안 제2조)
 - 1,330명 ⇒ 1,335명 (증 5명)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안 제4조 별표 3) 일부 변경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동
총 계	1,330→1,335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325→1,330					
2급	1	1				
4급	8	6	1	1		
5급	69→68	37	2	8	1	20
6급 이하 계	1,247→1,253					
별정직 계	4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3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3년 3월 9일

남동구 조례 제1952호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구의 책무)”를 “(구청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을 “투표인명부작
성기준일”로, “사람”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7조 중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을 “법 제10조제2항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성명”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 (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일자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청구인서명부의 제출)”을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주소나 거소”를 “생년월일, 주소”로, “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를 “청구의 대상, 취지 및”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에 따라 남동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심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동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남동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대표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 주민투표 청구권 심사 등을 위한 임명일 또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주민투표 청구권의 처리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심의회의 회의 등) ① 심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20조(종전의 제13조) 제2항 본문 중 “동조”를 “같은 조”로, “14일이내”를 “14일 이내”로, “수리여부”를 “수리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간내”를 “기간 내”로, “결정을 하기”를 “결정이”로 한다.

제23조(종전의 제16조) 중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을 “제10조제4항, 법 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신청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남동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2호서식 】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3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남동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 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 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4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5호서식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남동구 및 ○○○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남동구 및 ○○○동(○책중 ○권) 란에는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 별지 제6호서식 】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남동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7호서식 】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남동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주민투표법」이 개정(2022. 4. 26.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 : (안 제2조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 : (안 제3조)
-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 (안 제4조)
-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
: (안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 통·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 (안 제8조제2항)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
: (안 제12조제9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개정 및 신설)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년 3월 9일

남동구 조례 제1953호

남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남동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공연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해 구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노래·악기연주 포함), 연극, 무용, 마술, 미술, 전시 등의
모든 예술 활동을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해당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할 때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창작 지원
4.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5. 거리공연 안전 매뉴얼 수립
6.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 육성
2.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3.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관리
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거리공연 관리)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동으로 인한 도로 무단 점용 등을 단속하여 보행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 및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시간 및 무대 장소 등 거리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내 공공장소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공연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해 구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거리공연가의 책무 (안 제3조,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5조)
- 사업추진 및 지원 (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
- 거리공연 관리 (안 제8조)
- 사업의 위탁 (안 제9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3년 3월 9일

남동구 조례 제1954호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구청장”을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차례만”을 “차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에 따라 역사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관리 기간에는 수탁기관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 단서 중 “경우「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소래역사관 위탁 운영 시 수탁기관에서 '소래역사관 운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소래역사관 관리·운영 위탁 시 수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래역사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수탁기관에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조례 제12조(구성) 제6항
- 소래역사관 관리·운영 수탁기관 범위 확대
: 조례 제37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항, 제2항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3년 3월 9일

남동구 조례 제1955호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아트홀 운영을 제20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관리 기간에는 수탁기관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다른 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아트홀의 운영 및 공연에 관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재산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소래아트홀 위탁 운영 시 수탁기관에서 '남동소래아트홀 운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위원회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수탁기관에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조례 제5조(운영위원회) 제4항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년 3월 9일

남동구 조례 제1956호

남동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남동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문화예술·구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남동구의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보고·검사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경계선 지능에 있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계획 수립 등 이행체계에 대한 사항(안 제5조 ~ 제9조)

조 례

남동구의회의에서 의결된 남동구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년 3월 9일

남동구 조례 제1957호

남동구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장애인복지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고, 남동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관련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
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단체의 건전한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단체 운영 지원 사업
2.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인식개선사업
3. 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 수행평가 관련사업
5. 그밖에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 지원 사업 (안 제5조)
- 재정 지원 (안 제6조)

조 례

남동구의회의에서 의결된 남동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3년 3월 9일

남동구 조례 제1958호

남동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남동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동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4.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5조~제6조)
- 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7조)
-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제9조)

조 례

남동구의회의에서 의결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년 3월 9일

남동구 조례 제1959호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로, “「입양특례법」제3조에 따라 출산장려 및”을 “「입양특례법」 제3조에 따라 출산과”로, “남동구에 거주하는 자녀출산양육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 하는데”를 “출산장려 지원에”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입양특례법」제2조제3호”를 “「입양특례법」 제2조제3호”로, “중「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를 “중「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날인하여 매달”을 “날인하여 매달”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출산장려 지원) 구청장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장려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출산장려금 외에 출산장려 지원을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변경 :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남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범위의 확대 :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 지원 (안 제1조)
- 출산장려 지원 조항 신설 (안 제10조)
- 그 밖에 조문 띄어쓰기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년 3월 9일

남동구 조례 제1960호

남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남동구는(이하 “구”라 한다)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구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남동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구 탄소중립 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구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3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적·정량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4조(남동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남동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구의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남동구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 정책 수립·시행 관련 국장 및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나.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때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안전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할 때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탄소중립 정책수립·시행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녹색교통의 활성화)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사업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차량을 적절히 정비하고 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구청장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구청장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기후위기로 심화될 수 있는 질병을 관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6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녹색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기업, 단체, 공동주택, 학교, 기관 등에 표창·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촉진 등에 기여
2.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기 위한 관련 사업 참여 및 감축실적 우수
3. 자원 절약, 재활용, 폐기물 감량 등 녹색생활 확산에 기여
4. 그 밖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사업 참여 및 추진실적 우수

④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 운동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구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8조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전년도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안 제1조~제2조)
-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안 제3조)
- 남동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등(안 제4조~제12조)
- 녹색교통 활성화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안 제13조~제14조)
-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안 제15조)
-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안 제16조)
- 구의회 보고(안 제17조)

조 례

남동구의회의에서 의결된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년 3월 9일

남동구 조례 제1961호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4조 및 제58조”를 “제58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3조제1항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이 끝나면 해산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존속이 필요하나 안건 발생빈도가 낮은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설치·구성·임기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의 성격에 맞도록 위원회의 설치·구성·임기 등을 정비(안 제2조 ~ 제6조, 제8조, 제10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의에서 의결된 남동구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3년 3월 9일

남동구 조례 제1962호

남동구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남동구지회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모범운전자회”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남동구지회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안전 봉사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
3. 노인교통사고 예방활동 및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활동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및 재난 예방 활동
5.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활동
6.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감독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의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구청장이 활동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포상) 구청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남동구지회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모범운전자회 지원 사업 (안 제3조)
- 사업의 감독 및 평가,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안 제5조)
- 포상에 관한 사항 등 (안 제6조)

조 례

남동구의회의에서 의결된 남동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3년 3월 9일

남동구 조례 제1963호

남동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내 주차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으로 주차난 해
소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공간”이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그 밖에
주차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2. “주차공유”란 주차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주차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3.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의 정보

를 제공하여 주차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운영체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차공유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 시 주차공유 참여자 등 구민과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차공유 현황 등 실

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차공유 활성화 정책 발굴
2. 주차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시스템 및 시설물 등 지원사업
3.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4. 공유주차구획 지정 및 운영
5. 주차공유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6. 주차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공유주차구획 지정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주차장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동의 및 신청을 받아 공유주차구획으로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
4.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종교시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유주차구획 지정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공간

제8조(위탁관리 및 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주차공유 활

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구청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운영 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주차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으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수립 등 (안 제5조)
-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안 제6조)
- 공유주차구획 지정 및 운영 (안 제7조)
- 위탁관리 및 보조금 등의 지원 (안 제8조)
- 주차공유 운영현황의 공개 (안 제9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3년 3월 9일

남동구 조례 제1964호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소장”을 “담당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2022.11.1.자 조직개편으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보건소장에서 담당국장으로 변경하여 원활한 위원회 구성의 근거 마련
-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법을 법으로 약칭 수정

☐ 주요내용

- 제4조제2호의 「식품위생법」을 법으로 약칭 수정(안 제4조)
-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담당소장에서 담당국장으로 변경(안 제7조)

공 고

남동구의회의에서 의결된 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년 3월 9일

남동구 조례 제1965호

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건소장”을 “위생관리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2022.11.1.일자 조직개편으로 남동구 위생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보건소장에서 위생관리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여 원활한 위원회 구성의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남동구 위생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보건소장에서 위생관리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안 제9조)

조 례

남동구의회의에서 의결된 남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년 3월 9일

남동구 조례 제1966호

남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지역주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남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지역주민(해당연도 12. 31.이전 출생자)으로 한다. 단,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접종종류 및 지원기준) 예방접종의 종류는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이고, 대상포진 백신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대상에게 1회에 한해 접종을

지원한다.

제4조(비용지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조의 대상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가지고 보건소 또는 구청장이 선정한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접종 기관은 신청인의 주민등록 초본과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접종대상자는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하며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료기관 선정) 구청장은 예방접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남동구 소재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탁계약 체결)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료기관의 해지 등)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제10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안내) 구청장은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지원대상을 시행일로부터 2023년까지는 75세 이상, 2024년까지는 70세 이상 주민에 한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앞쪽)

계약목적	위탁의료기관은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선택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위탁기관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표시과목
	주소(소재지)		
	전화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생년월일
	면허종별		면허번호
	의료정보시스템	[] 사용 ※ 사용 시 업체명 : [] 미사용	
위탁계약조건	별지 뒷면 참조		
업무감독 및 위탁계약 해지	-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위탁계약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남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기간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구청장과 위탁의료기관은 대상포진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의료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월일

기관명 :
대표자 :
의료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쪽)

< 위탁계약조건 >

위탁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 ④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 ⑤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2호서식]

대상포진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1. 의료기관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귀 기관을 「남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직인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지원대상 (안 제1조 ~ 제2조)
- 접종종류 및 지원기준 (안 제3조)
- 비용지원 및 지원절차 (안 제4조 ~ 제5조)
- 위탁의료기관 선정 (안 제6조)
- 위탁의료기관의 해지 등 (안 제8조)
- 예방접종 피해 보상 안내 (안 제10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년 3월 9일

남동구 조례 제1967호

남동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동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명칭은“남동구 치매안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명칭은 “남동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하 ‘구’라 한다)”를 “(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7호 중 “시설종사자교육”을 “시설종사자교육, 치매친화치과의료기관 지정 및 홍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이하‘구청장’이라 한다)”를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달할”을 “알릴”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운영능력”을 “운영 능력”으로 한다.

제10조 중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치매환자가 구강관리 및 치아치료를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친화치과의료기관을 지정 및 홍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변경 : 「남동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동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지역사회 치매인프라 강화에 ‘치매친화치과의료기관 지정 및 홍보’를 포함하여 규정함 (안 제3조제7호)
-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위탁’을
→ ‘재계약’으로 변경함 (안 제4조제3항)
- 그 밖에 조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530호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관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에 의거하여 강제 처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전거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자전거를 찾아가는 등 권리행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8.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3. 3. 8. ~ 3. 22.(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처분대상 : 무단방치 자전거 2대(붙임 참조)
4. 보관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53-3번지
5. 처리방법 : 공고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
 -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 나. 기증,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
6. 열람대장 : “ 별 첨 ”
7. 문 의 : 남동구청 건설과 도로관리팀(☎032-453-2723)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대장(2023. 3.)

001		발견일시	2023.1.6.
		발견장소	정각지구대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회색
		제조회사명	미정
		이동보관일	2023. 1. 20.
		보관장소	적환장(도림동 53-3)
		처리결과	이동보관
002		발견일시	2023.1.6.
		발견장소	정각지구대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노란색
		제조회사명	미정
		이동보관일	2023. 1. 20.
		보관장소	적환장(도림동 53-3)
		처리결과	이동보관